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가족정책의 중심

2016년 제주 성인지정책 발전 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10년, 성과와 과제-

2016. 11. 25(금) 14:00~17:00

제주농어업인 회관 별관 2층 회의실

주최  여성가족부 주관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여성가족부 지정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Jeju Gender Impact Assessment Center

진행순서

| 개회식 | |
|-------------------------|---|
| 사회 : 손태주(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 |
| 13:50~14:00 | 《 등록 》 |
| 14:00~14:10 | 《개회식》 개회사: 현혜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
| 주제발표 및 토론 | |
| 14:10~14:40 | 《제1주제 발표》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 : 강경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
| 14:40~15:05 | 《제2주제 발표》 성주류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성 제고 방안 :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 15:05~15:15 | 휴식 |
| 15:15~16:05 | 《토론》 좌 장: 강익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토론자: 김준표 (사회학 박사, 제주대 강사) 정이은숙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전. 충남여성정책특별보좌관)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 16:05~17:00 | 《자유토론》 질의응답 및 마무리 |
| 17:00 | 《폐회》 |

목 차

제1주제 발표 / 1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

- ▶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제2주제 발표 / 23

◆ 제2주제 발표

성주류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성 제고 방안

- ▶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토 론 / 49

좌 장: 강익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토론자: 김준표 (사회학 박사, 제주대 강사)

정이은숙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전. 충남여성정책특별보좌관)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과제

강 경 속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10년, 성과와 과제

강경숙(제주여성가족연구원)

1. 들어가며

- 한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년이 경과하고 있음.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사업) 수와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율 확대 등 양적 성과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성평등이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제주 지역의 경우 2005년 1개 과제를 시작으로 2012년에 172개, 2015년에 385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정책 개선 및 환류와 같은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실현 성과는 미약하여 실질적인 제도 정착 및 발전이 요원한 상황임
- 따라서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효과 제고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발전 성과뿐만 아니라, 성평등 개선 성과 등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성과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 현황

- 지난 10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를 살펴보면, 2005년 1개, 2011년 44개, 2012년 172개, 2015년 385개로 매년 빠른 속도를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12년부터 대상 정책이 ‘법령’과 ‘계획’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도보다 3배 이상 증가함

<표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2005년~2015년)

(단위: 개)

| 년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전체 |
|-----|------|------|------|------|------|------|------|------|------|------|------|-------|
| 과제수 | 1 | 1 | 15 | 21 | 36 | 40 | 47 | 172 | 235 | 260 | 385 | 1,213 |

○ 이를 2013년과 2014년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3년은 법령 102개, 계획 1개, 사업 132개, 2014년은 법령 92개, 사업 168개로, 법령과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2>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현황 비교(2013~2014년)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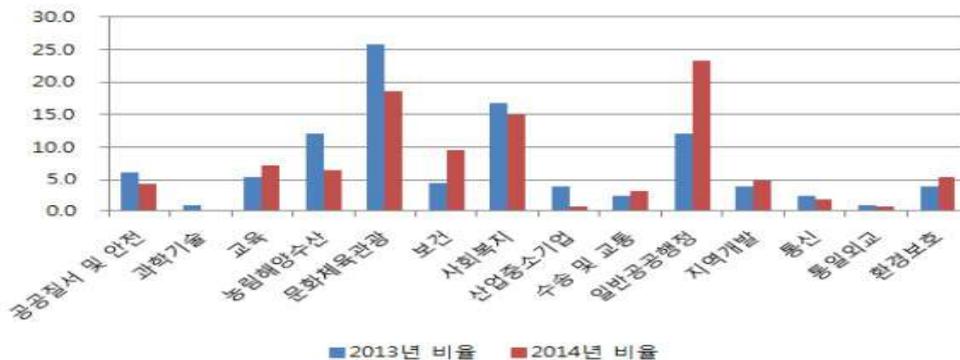
| 구분 | 2013년 | | | | 2014년 | | | | | |
|-------------|---------|-----|----|-----|-------|-----|----|-----|-----|---|
| | 총계 | 법령 | 계획 | 사업 | 총계 | 법령 | 계획 | 사업 | | |
| 전체 | 235 | 102 | 1 | 132 | 260 | 92 | 0 | 168 | | |
| 1. 제외대상 | 15 | 14 | 0 | 1 | 20 | 20 | 0 | 0 | | |
| 평가대상 | 2. 원안동의 | 192 | 77 | 0 | 115 | 233 | 66 | 0 | 167 | |
| | 3. 개선의견 | 23 | 11 | 0 | 12 | 3 | 3 | 0 | 0 | |
| | 반영결과 | 계 | 23 | 11 | 0 | 12 | 3 | 3 | 0 | 0 |
| | | 수용 | 20 | 11 | 0 | 9 | 2 | 2 | 0 | 0 |
| | | 불수용 | 0 | 0 | 0 | 0 | 1 | 1 | 0 | 0 |
| 일부수용 | 3 | 0 | 0 | 3 | 0 | 0 | 0 | 0 | | |
| 4. 기타(중단 등) | 5 | 0 | 1 | 4 | 4 | 3 | 0 | 1 | | |

자료출처 : GIA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gia.mogef.go.kr)

○ 이를 ‘사업’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 분야별로 비교해 보면, ‘문화체육관광’,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분야 비교(2013년~2014년)

(단위 : 개, %)



나. 법적 추진 기반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는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기본조례 등 타 법령과 연동하여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사항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여성정책 관련 법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2014.8.20)>
 - 목적 :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 실현
 - 주요 조항 : 분석평가 대상, 분석평가 결과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분석평가, 책임관의 지정, 분석평가 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2015.12.31)>
 - 목적 :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 관련 조항 : 양성평등위원회 설치.기능
-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2009.10.7)>
 - 제6조 3항. 자치 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의무 조항(2012.11.6 신설)

다.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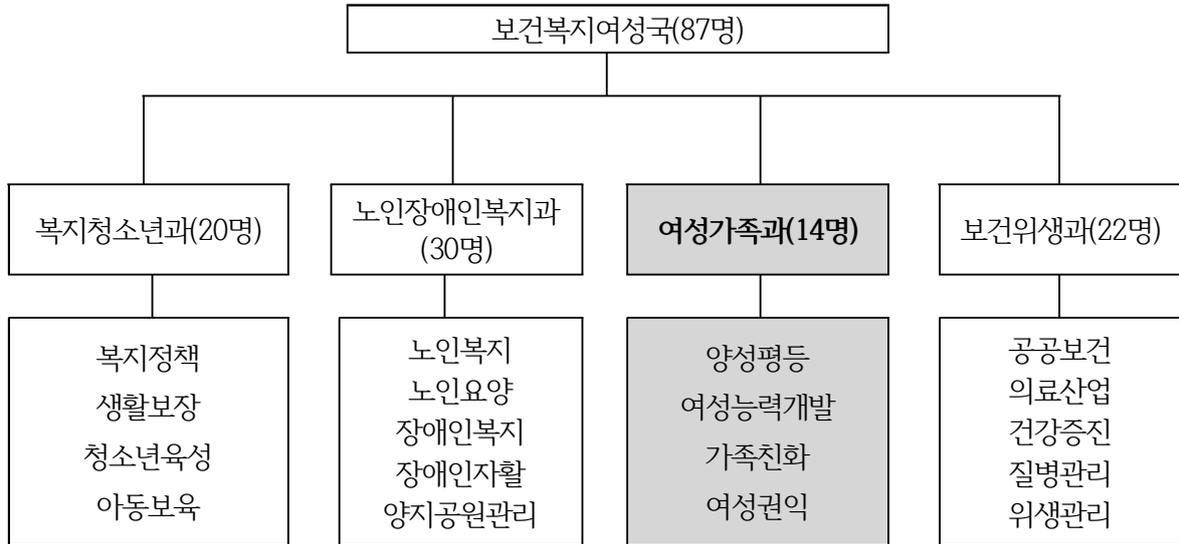
□ 담당 부서 및 인력

- 지난 10년간 담당 기구 및 인력 변화 없음(직제, 인력 규모 등)
- 201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총괄하는 행정 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여성가족과'임. 보건복지여성국 전체 인력은 87명으로, 복지청소년과 20명, 노인장애인복지과 30명, 여성가족과 14명, 보건위생과 22명으로 여성 가족과의 담당 인원이 가장 적음. 그 중에서도 여성가족과 소속 부서의 담당 인력은 양성평등계 4인, 여성능력개발계 3인, 가족친화계 4인, 여성권익계 2인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부서인 '양성평등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는 1인임

<표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 기구 변화

| 연도(시기) | 직제 | 주요업무부서 | 인력 |
|------------------|--------------------|---------------------------------|-----|
| 2007년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 여성정책계/여성활동지원계 /가족지원계/아동보육계 | 15명 |
| 2008년 ~ 2010년 | 보건복지여성국 양성평등정책과 | 양성평등정책계/여성활동지원계/ 아동보육계/가족지원계 | 16명 |
| 2011년 ~ 2015년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정책과 | 여성정책계/여성활동지원계 /아동보육계/다문화가족계 | 16명 |
| 2016년 10월 현재 |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양성평등계/여성능력개발계 /가족친화계/여성권익계 | 14명 |

<그림2>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정책 담당 기구(2016년)



○ 제주특별자치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인력 없음. 지난 3년 간 6개월 단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가 교체됨.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없음

<표4>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자의 업무분장표(2016년)

| 부서 | 직위 | 업무 |
|----------------|-----|----------------------------------|
|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계 | 주무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기금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 협의 조정 기구

- 2014년에 이르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¹⁾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한계임. 이와 별도로 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가 제도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01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조정 기구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음

<표5>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협의 조정 기구 현황

| 구 분 | 출범시기 | 구성 | 기능 |
|--------------------|-----------|---|---|
| 과제선정 위원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2006~2010) → 행정 주도: 도 행정부지사, 보건 복지여성국장, 여성정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여성 정책연구센터 연구원 등 • 후기(2011~2016) → 민간 주도 : 기관담당, 성별영향 분석평가센터 연구원, 민간 컨설턴트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
| 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2014. 12월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과 방법, 정책 개선 권고, 결과 공포 등 |
|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 2016. 4월 | 위원장(도지사) 1인, 부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상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양성 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관련 등 |

□ 컨설팅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주여성가족 연구원은 2015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지역 거점 센터로 지정되어 제주특별자치도

1) 2015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곳은 243개 중 60%(약 146개)이고, 실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곳은 20%(약 49개)임. 이중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17개 기관 중 13개 기관(76.5%)이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있으며, 8개 기관(47.1%)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6b).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공무원 컨설팅 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3년 간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컨설팅 지원 비율이 평균 95.5%로 대부분의 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6>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실적(2013년~2015년)

(단위: 과제 수, %)

| 구 분 | 대상 과제 수(A) | 컨설팅 과제 수(B) | 컨설팅 지원 비율 (B/A*100) |
|-------|------------|-------------|------------------------|
| 2013년 | 302 | 259 | 85.7% ²⁾ |
| 2014년 | 260 | 259 | 99.6% |
| 2015년 | 385 | 390 | 101.3% ³⁾ |

- 이를 방법별로 살펴보면, 한 과제 당 대면과 서면(GIA시스템, 메일) 등 컨설팅 지원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2015년의 경우 대면 컨설팅 비율이 26.1%로 전년도인 2014년 에 비해 10.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과제를 중심으로 1:1 대면 컨설팅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음

<표7>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방법별 컨설팅 지원 실적(2013년~2015년)

(단위: 건 수, %)

| 구 분 | 대상 과제 수(A) | 방법별 컨설팅 건수 | | | 방법별 컨설팅 지원 비율 (B/A*100) |
|-------|------------|------------|------------|------------------|----------------------------|
| | | 합계(B) | 대면 | 서면(GIA시스템, 메일 등) | |
| 2013년 | 302 | 373(100%) | 61(16.4%) | 312(83.6%) | 123.5 |
| 2014년 | 260 | 346(100%) | 53(15.3%) | 293(84.7%) | 133.1 |
| 2015년 | 385 | 524(100%) | 136(26.1%) | 388(74.3%) | 136.1 |

- 이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분석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종)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 의견’ 및 ‘종합분석보고서 검토’ 등에 대한 컨설팅이 많았음

2) 2013년 컨설팅 지원 비율이 낮은 이유는 대상 과제 중 도 교육청 과제 47개 중 6개에 대해서만 컨설팅(컨설팅 지원 비율12.7%)함으로써 전체 컨설팅 지원 비율이 낮으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99%의 컨설팅 지원 비율을 보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수보다 컨설팅 과제수가 더 많은 이유는 대상 과제 선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컨설팅이 컨설팅 과제 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표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별 컨설팅 지원 실적

(단위: 건 수, %)

| 구 분 | 대상 과제 수(A) | 과정별 컨설팅 건수 | | | |
|-------|------------|------------|----------|------------|--------------------------|
| | | 합계(B) | 대상과제 선정 | 분석평가서 작성 | 기타(검토의견, 종합 분석보고서 검토 등) |
| 2013년 | 302 | 373(100%) | 11(2.9%) | 354(94.9%) | 8(2.1%) |
| 2014년 | 260 | 346(100%) | 34(9.8%) | 267(77.2%) | 45(13.0%) |
| 2015년 | 385 | 524(100%) | 29(5.5%) | 258(49.2%) | 237(45.2%) ⁴⁾ |

□ 젠더 거버넌스 구축 . 운영 현황

- 제주 지역의 성 주류화 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2010년 이후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지역에서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성 주류화 정책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컨설턴트)는 1-2명의 소수에 불과하였음
- 제주 지역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가 구축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제도 개편에 따라 지역 차원의 컨설팅 요구가 증가하면서 부터임(정영태외, 2012)
- 2012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 인력과 컨설팅 예산 등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민간과 학계의 컨설턴트 참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 2016년 현재, 제주 지역에서는 민간과 학계로 이루어진 컨설턴트 21명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임. 제주 지역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표9>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현황(2012년~2016년)>

| 년 도 | 인 원 | 구 성 |
|------|-----|--------------|
| 2012 | 21명 | 학계, NGO |
| 2013 | 11명 | 학계, NGO |
| 2014 | 9명 | 학계, NGO |
| 2015 | 16명 | 학계, NGO, 법조계 |
| 2016 | 21명 | 학계, NGO, 법조계 |

4) 2015년의 경우 '기타' 다시 말해 검토 의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등 컨설팅이 전년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해당 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 등 법령 개정이 급증함에 따라 컨설팅이 급증하였기 때문인데 법령의 경우 전문가 검토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기 때문임

- 현재는 제주 지역 성 주류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젠더거버넌스를 강화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컨설턴트 등 민간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10>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운영 현황

| 구분 | 프로그램명 | 횟수 | 참석자 |
|----|--|----|--|
| 1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과제 선정 워크숍 | 5회 | 기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
| 2 | 성인지정책 컨설턴트 역량강화 워크숍 | 5회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기존 및 신규 컨설턴트 |
| 3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별 대면 컨설팅 | 4회 | 기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
| 4 | 2015 제주지역 성인지정책 포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여성정치포럼공동개최) - 제주지역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및 지방의회 심의 활성화 방안 - | 1회 | 기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의회의원, 시민단체, 도민 등 |
| 5 | 제주 지역 성인지정책 전문가 간담회 | 2회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원, 컨설턴트, 의회 의원 |

□ 정책 개선 관리 시스템

- 한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에 대한 점검 체계는 2011년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제정을 기점으로 크게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음. 제주 지역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 초기인 2007년부터 기관 자체적으로 매해 ‘환류 점검 워크숍’과 환류 실적 보고서를 취합하는 등 성평등 정책 개선 및 환류를 점검을 진행해 왔음.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2)」과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2014)」가 시행됨에 따라 각 기관의 정책 개선 실적 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표11>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점검 관련 법 조항

-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2조)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석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9조)

○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분석평가책임관은 그 해 추진된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분석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개선 의견’⁵⁾으로 통보된 정책에 대한 ‘개선 의견 수용 여부’⁶⁾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16년부터는 개선 예정이거나 개선 완료되지 않은 정책에 대한 실제 개선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음

<표12> 제주특별자치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개선 관리 추진 절차

| 구분 | 내용 | 담당 | 시기 |
|--------------|-----------------------------------|-------------------|-------------------------|
| 성평등 조치 사항 마련 | 체크리스트, 분석평가서 작성 및 제출 | 과제 담당 | 8월 말* |
| | 컨설팅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컨설턴트 | |
| 분석평가서 검토 | 분석평가서 검토 의견 통보 | 분석평가책임관 | |
| | 분석평가서 전문가 자문** | 젠더전문가 | |
| 반영 계획 제출 | 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개선 의견’의 경우 반영계획서 제출 | 과제 담당 | 검토의견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 정책 개선 관리 | 정책 개선 관리 및 실적 보고 | 분석평가책임관 | 차기년도 2월 말 |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분석평가서 검토 단계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은 필요 시 분석평가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여성가족부 지침)

○ 제주 지역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총괄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이에 따른 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담당자는 정책 개선 관리와 성별영향

5) 과제담당자가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검토 결과 성평등을 위한 계획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

6) ‘개선 의견’으로 통보된 경우 해당부처/부서는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반영계획서에는 ‘개선의견 수용’, ‘불수용’, ‘일부수용’,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해야 하며, ‘불수용’이나 ‘중단’으로 확인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

분석평가 추진 결과 보고 업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해 적절한 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젠더 전문성과 업무 전담 등의 역량이 부재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전문가 자문 성격의 검토 의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문가 자문을 받지 못한 과제의 경우에는 개선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고 '원안 동의'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 없이 사업 종료 이후에 정책 개선 점검이 이루어지다 보니, 정책 개선 점검을 통한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앞으로 성평등 개선 이행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과 반영 시스템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행에 따른 성과 반영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임. 타 지역의 경우,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기도 양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와 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이수율 및 사업 실시율을 성과 지표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6)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에 따르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 관리 등 보상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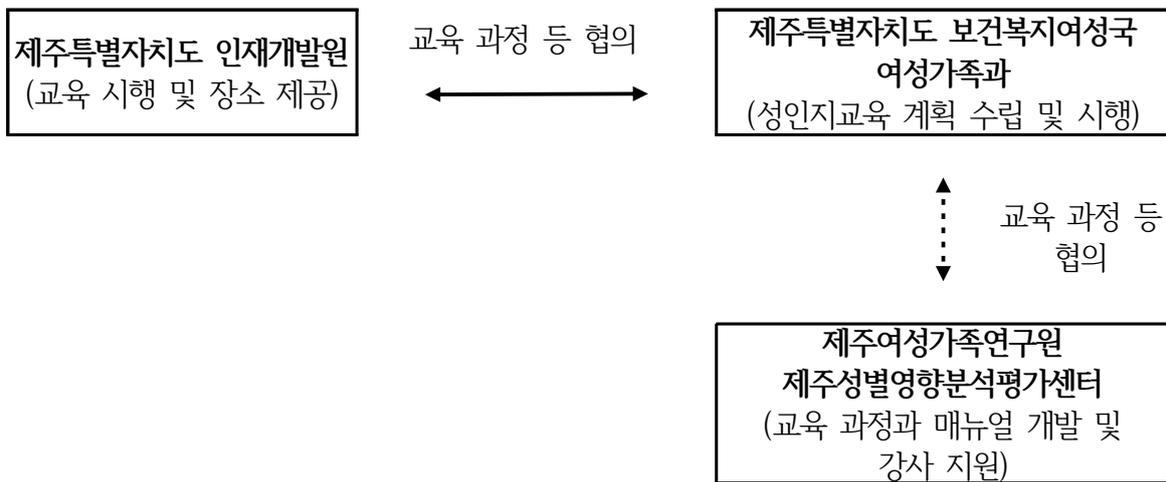
□ 제도 추진 예산

- 제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의 지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담 인력 인건비와 컨설팅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 자체적으로 심층분석연구와 시민교육, 젠더 전문가 인건비(자문비) 등 예산 마련이 필요함

라. 공무원 성인지 교육

- 제주 지역 공무원 교육 기관인 ‘제주인재개발원’은 매해 제주 지역 공무원 교육 전반에 대한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성인지 교육의 경우는 성별 영향분석평가 총괄 담당 부서인 도 여성가족과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단, 제주인재개발원의 상시 교육 프로그램 중 ‘신규 임용자 과정(7~9급 임용자 대상)’에 성인지교육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전체 교육시간 140시간 중 성인지 교육은 1시간(제주인재개발원, 2016)임

<그림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추진체계



- 제주 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성인지정책 시행 초기 (2007년~2012년)에는 과제담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일반 공무원으로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시행7)되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반 공무원 대상 중심 교육이 이루어진 반면 과제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6년에는 일반공무원과 과제담당공무원을 구분하여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였고, 성인지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주 지역 공무원 성인지교육 매뉴얼(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개발하여 지역에서 활동하는 성평등·성인지교육 강사들에게 배포하였음

7) 성인지 교육 시행 초기(2007년~2012년)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확대 시행에 대비해 공무원 전체의 성인지적 역량 확산 필요성이 대두되었음(정영태외, 2010).

- 제주 지역 성인지교육은 2007년부터 이루어졌는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77회, 8,148명의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였음. 2015년에는 교육 횟수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규모 집합교육에서 50인 이하 소규모 교육으로 교육 방식이 개선⁸⁾되었기 때문임

<표13>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2007년~2015년)

(단위: 회, 명)

| 구분 | 전체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실시횟수 | 77 | 6 | 13 | 5 | 5 | 5 | 6 | 9 | 9 | 19 |
| 교육인원 | 8,148 | 309 | 829 | 672 | 690 | 709 | 744 | 1,917* | 979 | 1,299 |

*2013년부터 성인지예산교육을 별도로 실시.(성인지예산교육 384명,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1,236명, 간부공무원 297명)

- 공무원 성인지교육 이수 현황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의 경우 184명이 참여하여 5급 이상 전체 공무원 543명 중 33.9%의 이수율을 보임.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1,115명이 참여하여 전체 4,567명 중 24.4%가 이수하였음

<표14> 2015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성인지교육 직급별 이수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교육 대상자 | 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율 |
|--------------|--------|--------|--------|
|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 543명 | 184명 | 33.9% |
|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 4,567명 | 1,115명 | 24.4% |
| 전 체 | 5,110명 | 1,299명 | 25.4% |

* 교육 대상자(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는 2014년 12월 기준

- 이와 같이, 5급 이상 공무원 교육 이수율이 33.9%로 6급 이하 공무원 교육 이수율 24.4% 보다 높지만,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1회성 집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성인지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간부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성인지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8) 이는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행정자치부)지표 변화를 반영한 것임. 해당 지표에 따르면 성인지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 상한 인원을 50명으로 제안하고 있음

마. 성인지통계 생산 및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성인지통계는 ‘제주여성가족통계’로 1998년부터 시작하여 격년으로 발간되었음. 2015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간하기 시작함

<표15>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생산 현황

| 구분 | 주요 내용 |
|---------------|--|
| 제주여성가족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격년제로 발간 |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통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제17조 성인지통계) • 2015년부터 발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가족, 보육, 교육 등 10개 주요 분야와 시도비교 11개 분야 - 통계청의 원자료 분석 및 귀농인구, 가족형태, 국제결혼과 이혼, 다문화학생, 농어가 인구, 경력단절 여성, 안전 관련 지표 등 53개 신규 지표 추가 - 총 382개 통계지표 구성 |

-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정책과 관련된 성별 분리 통계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나 실질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관련 자료 즉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조사 자료 등에 성별분리통계가 생산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3.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개선 성과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정책 개선 사항 점검을 통해 정책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그러나 성평등 개선 계획이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 반영되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평등 개선 성과를 살펴보고 위해, 본 연구자는 2016년 회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성평등 개선 이행 과정을 분석하였음
- 우선, 성별영향분석평가서의 성평등 조치사항 작성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170개

사업 중 성평등 조치 사항을 마련한 과제는 144개(84.7%), 성평등 조치 사항이 없는 과제는 26개(15.3%)임

<표1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 유무

(단위 : 개, %)

| 구 분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 합계 |
|-----------------|----------|----------|----------|-----------|
| 전 체 | 46(100) | 73(100) | 51(100) | 170(100) |
| 성평등 조치 사항 있음 | 40(87.0) | 59(80.2) | 45(88.2) | 144(84.7) |
| 성평등 조치 사항 없음 | 6(13.0) | 14(19.2) | 6(11.8) | 26(15.3) |

- 성평등 조치 사항이 없는 과제 26개를 제외한 144개 과제 중, 성평등 조치 사항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적절하게 마련된 과제는 44개(30.6%), 성평등 조치 사항이 부적절한 과제는 100개(69.4%)임

<표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적절성

(단위 : 개, %)

| 구 분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 합계 |
|-------------------|-----------|-----------|-----------|------------|
| 전 체* | 40(100.0) | 59(100.0) | 45(100.0) | 144(100.0) |
| 성평등 조치 사항 적절함 | 19(47.5) | 15(25.4) | 10(22.2) | 44(30.6) |
| 성평등 조치 사항 부적절함 | 21(52.5) | 44(74.6) | 35(77.8) | 100(69.4) |

* 전체 : 성평등 조치 사항이 없는 과제 26개 제외

- 성평등 조치 사항이 부적절한 100개 과제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부분 성평등 조치 사항의 구체성이 낮거나,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경우였음
 - 우선, 성평등 조치 사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 사업 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41개 과제(41%)로 가장 많았음
 - 다음으로, 해당 사업의 특성이나 성평등 목표와는 상관없이, 남성과 여성 참여자를 50대 50으로 설정하는 기계적 평등 의식을 보여준 경우가 31개(31%)였음

- 성평등 목표와는 상관없이 본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을 기재하거나, 성별 차이(특성)나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 및 인식이 없는 물성적 관점에서 성평등 조치 사항을 도출한 경우가 28개(28%)였음(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사업의 경우 참여자의 성별 특성이나 차이를 도출할 수 없다거나, 성별 차이 또는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성차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

<표18>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성평등 조치사항의 부적절 과제 유형
(단위 : 개, %)

| 구 분 | 제주특별자치도청 | 제주시청 | 서귀포시청 | 합 계 |
|----------------------|-----------|-----------|-----------|------------|
| 전 체 | 21(100.0) | 44(100.0) | 35(100.0) | 100(100.0) |
| 구체성 없음 | 7(33.3) | 22(50.0) | 12(34.3) | 41(41.0) |
| 물성적(gender-blind) 관점 | 11(52.4) | 10(22.7) | 7(20.0) | 28(28.0) |
| 기계적 평등 인식 | 3(14.3) | 12(27.3) | 16(45.7) | 31(31.0) |

- 성평등 조치 사항이 적절한 과제 44개에 대해서는 현재, 이행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 중임. 정책 개선 이행 모니터링은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임
-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정리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담당자들은 정책 개선안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이행한 경우는 많지 않았음. 따라서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개선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평가- 환류 전 과정에서 정책 개선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임

4. 결론 및 향후 과제

- 지난 10년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와 개선 방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기관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장의 의지와 추진 체계가 제도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기관장의 책무성과 추진 체계 강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위와 같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 기반이 미약함에 따라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 개선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향후 도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성평등 개선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1) 제주 도정의 성평등 비전 및 목표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누구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간과되어 왔음.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장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정책 목표, 주요 업무계획, 중장기 계획 등에 성평등 가치와 비전을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

2) 담당 기구 위상 강화 및 전담 인력 확충

- 현재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계’단위의 담당 기구 위상을 ‘양성평등국’ 또는 ‘성평등 기획관실’ 등 개편을 통한 위상 강화
- ‘전문직위제’로 전담 인력 배치하여, 분석평가서 검토 및 정책 개선 사항 점검 및 분석 등 강화

3)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상시 운영

- 젠더 전문가 등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 위원 확충 및 민간 위원 확대
- 위원회의 분기별 회의 개최
- 양성평등위원회의 성주류화분과와의 교류 방안 마련

4) 담당자(총괄, 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관리 지표 반영

- 공무원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기관(과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성과 관리 지표 반영

5) 제도 추진을 위한 자체 예산 지원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자체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16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공무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교육 강사 수당 500만원과 워크숍 500만원 총 1천만원임

- 여성가족부의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지원 예산은 센터 전담연구원 1인에 대한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컨설턴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시민 교육, 젠더 거버넌스 운영, 정책 개선 모니터링, 성인지정책 심층 분석 연구, 전문가 자문 등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6) 대상 (사업) 과제 선정 체계 개선

- 제주지역은 민관이 함께 하는 과제선정위원회(간담회)에서 선정 기준⁹⁾을 마련하고 기관별 선정 절차를 거쳐 대상 과제를 선정함. 그러나 대부분 자신이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준과 상관없이 대상 과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적합한 과제가 선정되고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대상 과제 선정 체계 개선이 필요함
- 한 가지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도 주요정책에 대한 성인지 검토 제도’(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 결재를 받는 사업의 결재 서류에 성인지 검토 결과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임

7) 정책 개선 환류 체계 개선

- 정책의 계획, 집행, 평가 등 과정별 정책 개선 점검을 통해 정책 개선 관리 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계획 단계에서 최종 분석평가서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데 검토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최종 분석평가서 검토 통보는 분석평가책임관(기관담당)의 역할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젠더 관점이 필수적임. 따라서, 젠더 전문가를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요청할 시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집행 단계에서는 이행 점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때 민간이 모니터링

9)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르면, 분석평가 대상 선정 기준으로 첫째 수혜집단에서 성별격차가 발생하는 사업, 둘째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 셋째 수혜대상 범위가 넓고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주최가 되고 행정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는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 기관 및 사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 등 제공

8) 성인지정책 추진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강화

- 제주 지역의 경우 현재 성인지정책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젠더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분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확대하고 보다 심화된 논의와 작업 - 심층 분석, 대상과제 선정, 모니터링, 시민 교육 등- 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시 운영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임. 이 때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주체 간의 의사소통 구조를 마련하는 큰 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9) 지역 성평등 인식 확산 노력

- 제주 지역 성인지교육 시스템 구축(성인지교육센터 설립 등)
 - 공무원 대상 상시 교육 과정 마련
 -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성인지교육 강화
 - 시민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 지역 성평등 수준(맥락과 인식) 고려한 대상별 성평등 교육 매뉴얼 지속 개발 (내용과 방법론)

※ 참고 문헌

- 강경숙.김민선.손태주(2015), 「2015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손문금.서정우.전향숙(2015), 「전라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2016a),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b),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윤연숙.박홍주.한미경(201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과분석과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영태.강창민.강경숙(2010), 「제주 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정영태.강창민.이솔.김지선(2012), 「2012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정영태.강창민.김지선(2013), 「2013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정영태.강창민.김지선.강혜경(2014), 「2014년 제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 사업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제주특별자치도(2016), 「2015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2016), 「2016년도 교육훈련 계획」.

성주류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성 제고 방안

김 경 희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성주류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성 제고 방안

김경희(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1. 여성들의 삶, 현주소와 성평등

각 분야에서 여성리더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기업에 여성임원도 증가추세라고 언론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여성관련 법·제도가 마련되면서 여성권익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결정구조 안에 여성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질적 권한도 미흡하다. 알파걸의 등장, 각종 고시에서의 여성합격률 상승 등 여러 지표들이 성평등이 달성되었음을 증거하는 근거로 제시되지만, 이는 성평등에 대한 착시 현상을 가져올 뿐 취업활동, 가사분담, 폭력 등 이슈에서 여성은 여전히 차별받는 존재이다.

차별이 적은 공무원 시험이나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로스쿨 등 전문직 시험에의 여성합격률은 해마다 경신되어 5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나 20대 여성의 취업률이 높은 것은 의미 있지만 높은 취업률이 출산, 육아의 부담이 커지는 30대에는 지속되지 않는다. 또한 전문직을 제외한 대다수 여성들 일자리는 질이 낮은 임시직·비정규직으로 연결된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특히 여성들이 심각하게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사회 빈곤층이 되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대학교 진학률이 여학생이 남학생을 추월한지 오래지만 노동시장에 진출하면 여성은 남성의 62.6%에 해당하는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사시합격률 역시 여성이 높지만 대형로펌에서 여성을 합격률만큼 뽑지는 않는다. 육아와 교육을 책임지면서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사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가정은 쉽터일까? 또 다른 일터일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는 아직은 가능하지 않다.

생존을 위해 무한의 경쟁에 허덕이는 대다수 여성들의 피폐화된 삶에 대한 언급은 잘 드러나지 않고, 여성들의 현실적인 삶이 보다 행복해졌거나 보다 평등해졌다는 실질적 체감도도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여성의 권한과 지위를 높이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이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 성폭력·성희롱·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의 자유권적 권리에 대한 침해로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에서의 성별권력관계는 여성의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다양한 성평등 관련 법¹⁰⁾과 제도, 정책의 발전과 확대, ‘남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요구 등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새로운 여성정책 의제 발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여성중심성’ 또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은 성별 뿐 아니라 교육수준, 계층, 지역, 연령, 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집단 간 불평등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모든 여성이 모든 남성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더 좋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내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내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다양한 집단적 속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표준화되고 획일화 되었던 과거에 비해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사회변화는 모든 집단에 적용될 수 있는 획일적인 정책 보다 집단별 욕구에 근거한 맞춤형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여성정책’도 다양한 집단들 간의 차이가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불평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접근, 정책의제가 필요하다. 일자리, 복지, 인권 등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여성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통합적인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성평등 정책의 전략은 여성의 지위와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모든 정책에 성평등적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의 이중전략이 요구된다. 성주류화를 통한 성평등은 ‘여성정책’의 일정한 성과 없이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며 오히려 젠더의제를 잘 드러내지 못할 염려가 있다. 여성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할 ‘여성정책’은 ‘성평등정책’의 전략으로 실행되고, 여성의제를 넘어 모든 정책과정에 성평등적 관점을 통합시키기 위한 ‘성주류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성평등 정책의 최종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 보살핌과 가사의 동등한 분배,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의 종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성평등을 목표로 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이 국가의 의지를 반영하는 로드맵으로 국가페미니즘의 청사진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성평등’을 국정운영의 분명한 아젠다로 설정하고, 여성의 사회적, 정치적 세력화를 통해 차별의 문제를 개선해 가면서 성평등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0)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뒤, 11차례 개정되었으며,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전면 실시됨

II.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황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행한 ‘2016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49로 조사대상 144개 나라 가운데 116위이다. WEF는 경제 참여, 교육 성취도 수준, 보건, 정치 권한 분야에서 남녀 사이의 격차를 측정해 국가별 순위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참여 분야에서 123위, 비슷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임금을 비교한 임금평등 항목에서 125위에 올랐다. 76위인 보건, 92위인 정치권한, 102위인 교육성취도에 비교하면 경제 분야의 불평등이 더욱 심한 상태이다. 세계에서 양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0.874), 이어 핀란드(0.845), 노르웨이(0.842), 스웨덴(0.815) 순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한국형 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성평등 수준과 추이를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국가 성평등지수는 우리나라 남녀의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 각 분야의 성평등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관리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이다. 2014년 국가성평등지수의 대표 지표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되는 성평등한 사회참여영역에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분야를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에 복지, 보건, 안전 분야를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에 가족, 문화·정보 분야에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표 1> 성평등 지수를 구성하는 분야와 세부 지표

| 분야 | 구성지표 |
|---------|---------------------|
| 경제활동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
| | 성별 임금격차(성비) |
| | 상용근로자의 성비 |
| 의사결정 | 광역 및 기초의원의 성비 |
| | 5급 이상 공무원의 성비 |
| | 관리자의 성비 |
| 교육·직업훈련 | 평균교육년수 성비 |
|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
| 복지 | 기초생활보장자 비율 |
| | 공적연금 가입자의 성비 |
| | 장애인 의무고용자 성비 |
| 보건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
|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
| 안전 | 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성비 |
|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

| 분야 | 구성지표 |
|-------|-------------------------|
| 가족 | 가사노동시간의 성비 |
|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
| | 육아휴직의 성별 격차(여성의 10% 기준) |
| 문화·정보 | 여가시간의 성비 |
| | 여가시간의 만족도 성비 |
| | 인터넷 이용률 성비 |

자료 : 주재선 외(2014)

<표 2> 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성평등 상위지역 (Level-1) | 경기 | 경기 | 경기 | 경기 | 강원 |
| | 광주 | 대전 | 대전 | 대전 | 경기 |
| | 서울 | 서울 | 서울 | 서울 | 대전 |
| | 제주 | 인천 | 제주 | 제주 | 서울 |
| 성평등 중상위 지역 (Level-2) | 강원 | 강원 | 강원 | 강원 | 인천 |
| | 경남 | 광주 | 대구 | 울산 | 전북 |
| | 인천 | 대구 | 인천 | 인천 | 제주 |
| 성평등 중하위 지역 (Level-3) | 충북 | 충북 | 충북 | 전북 | 충북 |
| | 대구 | 경남 | 광주 | 광주 | 대구 |
| | 대전 | 전남 | 경남 | 대구 | 부산 |
| | 전남 | 제주 | 부산 | 부산 | 울산 |
| 성평등 하위지역 (Level-4) | 충남 | 충남 | 충남 | 충북 | 전남 |
| | 경북 | 경북 | 경북 | 경남 | 경남 |
| | 부산 | 부산 | 울산 | 경북 | 경북 |
| | 울산 | 울산 | 전남 | 전남 | 광주 |
| | 전북 | 전북 | 전북 | 충남 | 충남 |

(2014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연구, 여성가족부)

Ⅲ. 성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고민들

여성운동의 정책개입은 여성과 여성문제를 인식하는 다양한 관점이 부딪히고, 가부장질서를 유지하는 힘과 대항하는 힘의 끌고 당기는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정책참여는 지역사회 내에서 권력과 자원의 재분배를 위해 협상하고, 논쟁하는 정치를 만들어내고, 갈등과 협상, 협상과 수용의 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정책통로를 형성하면서 정책 개입력을 높이게 된다. 지자체에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에 성평등관점을 통합하여 여성정책 추진기구를 확대하고, 성인지적 예산수립,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며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1. 여성운동의 정책개입

80년대 후반이후 여성운동은 여성들의 요구를 집약하여 정책으로 입안, 수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고, 여성권익을 위한 법제화 추진에 힘써왔다. 문제인식에 따른 이슈화와 여론화 과정을 주도하며 정책에 영향력을 가하는 정책비판과 대안제시 활동을 펼쳐왔다. 여성정책이 다른 정책에 구색맞추기식으로 여겨지거나,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취급되어 대상이나 범위가 한정되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여성친화적 법과 정책이 제정 이후에 정책의 강제성이 미흡해지는 것에 대한 의견을 내고 정책과정에 참여해 왔다. 여성 스스로의 욕구와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마련하면서, 참여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여성의 시민권을 확대해왔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는 일, 거리서명, 전시회나 문화행사 등의 홍보 활동, 조례 제·개정 등을 위한 의회와의 협력적 관계형성과 의원간담회 등을 통한 거버넌스 확립 등 영향의 정치와 각종 센터 운영을 맡아 인적자원 및 조직 운영, 재정관리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문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수행자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관련 문제를 이슈화, 여론화, 법제화 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에 평등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2. 행정기구와 구조에의 참여

여성정책위원회, 여성정책담당관, 지자체 산하 여성발전센터 책임자 등 정책결정직과 자문기구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 행정기구와 행정관료의 가부장적 성격을 바꾸고 성평등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왔다.

‘여성발전기본법’ 개정과정에서 입법안인 ‘여성정책기본법’과 ‘성평등기본법’에 대해 여성의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과 같이 양성평등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안 제·개정 운동에 참여해 왔다.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성차별적 법 개정운동의 성과로 가족법, 남녀고용평등법, 성폭력특별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 방지법 등의 내용이 보완되었다.

여성정책 연구나 여성정책전담기구 등 여성친화적 기구를 설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직장맘 센터, 보육기관, 지역복지관, 상담소, 자활지원센터와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며 기관 위탁사업을 맡아 직접 서비스적인 기능을 담당해 왔고, 때로는 공공근로와 방과후 아동지도, 여성가장 지원사업 등 정책 수행을 직접 맡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의

정책비판이나 대안수립 활동보다 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에 치중하면서 여성운동의 진보성과 역동성이 약화되고 행정의 단순 대행역할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어 왔다.

시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도화 되어있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추진과정에서 제대로 수렴되는 것은 쉽지 않다. 각종 위원회는 제대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참여에 대한 기회는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공청회나 토론회는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지, 조례 제·개정시 의견수렴 과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광역·기초간 시·구정 연계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었는지,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는 원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등 여성들의 지역정책 개입사례는 자치행정 분야에서도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3. 성주류화 추진

성주류화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게 하기위한 전략이다. 이는 여성이 사회전반의 주류영역에 완전하게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성관점이 통합되며, 결국 사회발전의 목표와 원리, 운영 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성주류화는 모든 수준, 모든 단계의 모든 정책에 성평등한 시각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과정을 평가·개발·개선·(재)조직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디자인, 실행, 모니터와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해야 한다. 남녀가 사회 각 분야에 충분한 참여와 세력화를 이루기 위한 조직의 재구조화 과정이므로, 인력과 재정자원의 재분배, 제도와 문화의 변화 등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변화 과정이 필요하다.

성주류화의 목표는 여성정책을 뛰어 넘어, 일반정책까지도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의 부당함을 인식하는 관점으로 정책의 성별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남녀 불평등하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있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은 예산과 정책추진의 과정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진행되도록 하여, 성별영향을 고려한 정책수립과 추진, 공공지출의 성별수혜분석 등이 이루어져 지자체의 정책이 성평등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하는 역할들을 해 왔다. 여성관련 정책과 예산을 분석하면서 지역사회에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나, 여성관련 조례나 담당부서 등 인프라 문제에 대한 제기 수준에 머물렀고, 미인대회

지역예선대회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여성발전기금의 증액, 여성교육훈련비 증액 등 여성정책 예산사업에만 국한되고 일반정책 예산사업에의 성인지적 접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인적자원이나 인력풀이 부족하고, 성주류화 추진과 관련한 사업은 개별 단체에서 중점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정책 중 정책목표가 적합한지, 예산규모는 적절한지, 기존의 정책성과와 연계는 되고 있는지, 성별영향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환류는 되고 있는지, 성별분리통계자료 구축 등 인프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지속적인 정책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다.

4. 여성들의 풀뿌리 정치운동

1) 성평등한 지방정치 만들기

성평등한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빈곤, 차별, 환경훼손과 치안 불안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계획가, 관리자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지역에서 여성들은 여성관련 의제와 주민생활의제가 정책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로 제정되도록 노력해 왔다. 남녀가 균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성평등한 지역거버넌스를 형성해 나가도록 힘쓰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성리더십을 발굴·교육하며, 다양한 여성들의 역량이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시스템이 형성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결정 과정에 여성참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정치세력화의 바탕이 되는 일이다.

지방의회의원의 1/3이상 여성의석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정치제도 개선활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정당활동, 여성정치참여를 독려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성장한 여성리더들이 지방의회에 출마 할 수 있도록 여성후보 발굴 및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성에게 정치진출은 여전히 만만한 선택의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진입의 폭을 넓이는 것 못지않게 지방의회 상임위, 의장단에도 반드시 여성이 포함 되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2) 일상의 생활정치 실현

지역정치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삶의 정치·생활정치는 아직도 정치인들의 구호나 장식으로 존재한다. 87년 이후 지역운동은 다양하게 분화·발전되었으나 여성들이 정치논의의 중심이 된 적은 없고, 지역의 권력감시, 사회문제의 공론화,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이익대변 활동 등에서도 정치적 파위는 부족했다. 시민사회 일부에서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도했으나 세력은 여전히 미미하고, 영향의 정치를 넘어설 사회세력화를 형성하기에는 힘이 부친다.

지역주민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참여 등을 이끌어내는 시민운동조직과는 다른 시민운동의 대중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가야 한다. 정치지향적 시민단체 활동은 실질적으로 준정당적 성격(선거운동, 입후보자 발굴·지원, 정책제언, 정치적 대리인)을 띠는 ‘지역정당’과도 같은 활동을 말한다. 주민운동없이 지역정치 혁신은 불가능하다. 주민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데 여성들은 지역에서 도서관운동, 교육공동체운동, 생협운동을 포함한 지역의 모든 운동역량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지역에서 생활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는데 힘쓰고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시의원, 구의원 같은 주민정치활동가가 준비되고 정책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출마하고 당선되는가 보다 어떤 가치와 관점으로 선거에 임하는가가 중요하다. 저항형에서 정책형으로 사고를 전환시키고, 지역정치를 재편할 ‘지역정책 아젠다 세팅’ 그룹을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의식이 성장한 주민운동세력과 당파를 떠난 개혁적 후보의 정치진입을 모색하고 생활우선, 복지를 중시하는 정책을 지향하도록 힘쓰고 있다. 개인과 가족만 잘먹고 잘살자는 ‘사적욕구’에 기초한 지역운동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더불어 잘살기 위한 사회적·계급적 논점 및 과제가 결합되어 공적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IV. 성주류화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기존의 여성을 특성화한 사업들은 여성의 역량강화에는 필수적이었으나, 여성과 남성간의 평등을 위해 요구되었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고, 중요한 자원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이 개발되었다. 성주류화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성과 남성 각각의 입장에서 그 정책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제안된 정책이 성평등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다. (Squires, 2010)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을 재조직하고, 향상시키고, 개발하고, 평가하여 모든 정책의 매 단계 수준에서 성평등의 관점이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법, 제도적 평등, 동등한 처우를 통해 여성의 사회 진입을 막아온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제거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의사결정자로

참여하도록 수를 확대해 나가고,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켜 나가면서 남성중심적인 주류 영역의 시스템과 문화가 성인지적으로 재편되는 성주류화의 3단계를 거쳐야 성평등한 사회가 실현이 된다. 성주류화는 여성 및 정치 이해관계나 정치 전망에 대한 여성의 관점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법적인 정비, 공적부문에서의 동등한 참여, 평등을 핵심적 가치로 수용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때 달성 가능해 진다.

2015년 7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통계(제8조), 성주류화 조치(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제15조), 성인지예산(제16조) 관련 조항 등 성주류화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2012. 3. 16 시행), 일부 개정('14. 3. 24, '15. 2. 3),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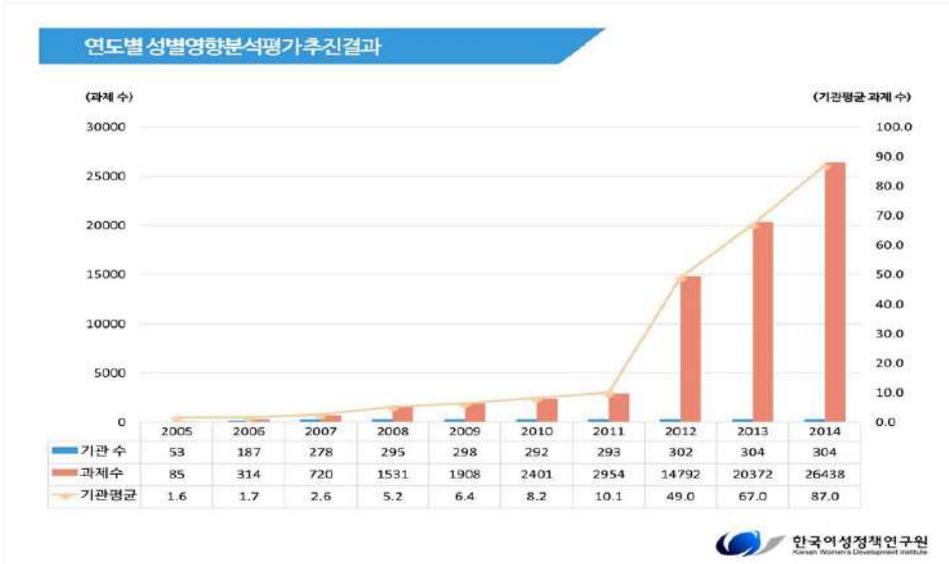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전에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범위가 사업뿐 아니라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규칙)과 계획에 까지 확대되었고, 2016년부터 정부 홍보사업(인쇄물 홍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환류추진체계가 강화되어 분석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중앙 및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하여야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에는 2012년에 9개였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17개¹¹⁾로 확대되었다.

11)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인천여성가족재단,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대전발전연구원(대전세종연구원), 광주여성재단, 전남여성플라자, 전북발전연구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대구여성가족재단,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창원대학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표 3>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표 4>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참여과제 현황



2014년 중앙행정기관의 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는 총 2,106개 과제(법령 1,930개, 계획 31개, 사업 145개)이고, 114건의 개선의견에 대한 기관의 개선의견 수용률은 89.5%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총 24,332개 과제(법령 1,930개, 계획 31개, 사업 145개)를 성별영향분석평가 하여 2,732개의 개선의견에 대한 기관의 개선의견 수용률은 82.9%에 달한다.

2. 성인지예산의 제도화

1)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성인지 예산(Gender Sensitive Budget)은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지원이나 양성평등을 위한 개별 사업단위의 예산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재정 운용 전반에 걸친 재정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상황, 수요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성 중립적(gender neutral), 몰성적(gender blind) 재정 운용이 현재의 성 불평등한 사회를 유지 또는 개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하였다.

2)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현황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는「국가재정법」제정(‘06)시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부칙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2010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성인지 예산서는 각 부처가 작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취합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대상사업, 작성기준 등은 여성부와 협의하여 기획재정부가 지침으로 각 부처에 전달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은 양성평등기본계획, 성별영향 분석평가등과 연계 운영된다.

<표 5> 성인지 예산서 작성 현황

(단위: 개, 조원, %)

| 회계연도 | 기관 수 | 사업 수 | 규모 | | | 총지출 | 비중 |
|------|------|------|------|-----|------|-------|-----|
| | | | 예산 | 기금 | 계 | | |
| 2010 | 29 | 195 | 7.3 | - | 7.3 | 291.8 | 2.5 |
| 2011 | 34 | 245 | 10.2 | - | 10.2 | 309.0 | 3.3 |
| 2012 | 34 | 254 | 8.8 | 1.9 | 10.4 | 326.1 | 3.3 |
| 2013 | 34 | 275 | 10.9 | 2.0 | 12.9 | 342.5 | 3.8 |
| 2014 | 42 | 339 | 14.5 | 7.9 | 22.4 | 356.1 | 6.3 |
| 2015 | 42 | 343 | 17.4 | 8.7 | 26.1 | 376.0 | 6.9 |
| 2016 | 43 | 332 | 18.0 | 9.7 | 27.7 | 386.7 | 7.2 |

<출처:국가 성평등제고를 위한 성인지예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6>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 수 및 예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지적 성과 관리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연계하여 정책 변화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 유도력은 충분하지 않다.

3) 성인지 예·결산 분석

국회의 성인지적 예·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09년 이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분석은 대상사업 선정, 성별 수혜, 성인지성과 목표 및 지표 등의 적정성을 사업별로 분석하여 사례 제시하고 있다.

「성인지 결산」분석은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사업목표와 성인지적 성과목표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성인지 측면에서 예산의 변화를 반영했는지를 연계 측면에서 분석하여 사례를 제시한다.

예산분석실의 각 예산분석관이 담당 부처 예·결산 분석 업무와 병행하면서 성인지 예·결산 분석의 전문성 및 일관성 측면에서 일부 한계를 지닌다.

3. 지방자치단체의 성주류화의 현황

자치단체의 성주류화 제도화 수준은 자치단체장의 마인드나 여성운동의 역량 수준에 따라 정책환경도 다르고, 실행주체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역량이 다르며, 실행도구들의 준비정도도 다를 수 밖에 없다. 각 자치단체의 성주류화 현황은 실행주체, 정책환경, 실행도구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해볼 수 있다.

< 표 6> 자치단체 성주류화의 현황 및 문제점

| 구분 | | 현황 및 문제점 |
|----------|-----------------|--|
| 실행 주체 | 연대구축 방법 및 정도 | * 기본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성주류화 연대 기능은 약함 |
| | 성주류화 인식 | * 전문가를 제외하고 공무원, 민간단체의 성주류화 인식은 대체로 낮은 편 |
| | 성주류화 전문성 | * 공무원 및 민간단체의 성 주류화 전문성은 부족 |
| 정책 환경 | 법·제도적 기반 | * 관련 조례 및 지침은 제정되었으나 성인지적 시각의 정비 보완 필요 |

| 구분 | | 현황 및 문제점 |
|-------|---------------|---|
| | 추진체계 | * 성주류화 추진부서 및 정책 추진 부서가 있음 * 실국별 책임있는 추진을 위한 제도보완 필요 |
| | 고위관리직 관심 및 지원 | * 고위관리직의 성주류화 관심 및 지원은 저조 |
| | 일반 공무원 협조 | * 일반 공무원의 협조는 양호한 편 |
| 실행 도구 | 성별영향평가 | * 정책 관련 성별영향평가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으나 정책환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음 |
| | 성 인지 예산 | * 성인지 예산 기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부족 |
| | 성 인지 통계 | * 정책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성인지 통계만 구축 |
| | 성 인지 교육 | *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수행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확대 필요 |

V.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제도의 발전방향 및 개선 과제

성주류화 제도는 미래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하여 출산·육아·여성의 경제활동이 중요해지면서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양성평등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는 단순히 형평성 차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만족도,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성인지적인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정책의 성주류화는 정책 담당자와 NGO 그리고 관련 전문가 세 집단의 파트너십과 성주류화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성주류화 전략이 개발되어야 가능해진다. 지역의 현실에 맞는 성주류화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이 성주류화 현황과 여건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 또한 지역 현실에 부합한 성주류화 제도화를 위한 전략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연계 활성화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별로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를 연계하여 대상사업별로 성평등 목표를 정하여 성과관리 하도록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전문직위제로 기관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채용해야 한다.

- 2)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공무원은 5급(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또는 6급(기초자치단체)이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대상과제를 선정하거나 성별영향분석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컨설팅을 받고 GIA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 3) 성인지 예산서의 부속서류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예산반영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 4) 정부업무평가 항목에 성별영향분석평가시에 공무원 교육인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 노력정도,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개선 노력정도를 포함시켜 성주류화 정책을 적극 수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5) 대상과제를 양적으로 축소시키고 질적인 수준을 높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이나 계획은 젠더전문가들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되 체크리스트를 통해 성별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다.

2. 성인지예산의 실질적인 제도 운영

- 1) 기획재정부, 여성부, 각 부처의 역할을 정비하여 추진체계를 확고히 한다. 성인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성인지예산 담당부서로서 재정전략 · 중기재정 운용에 있어 성인지적 접근을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성인지 분석의 전문 역량을 갖추고 각 부처에서 성인지적 적정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2) 공공부문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성평등을 국가 발전의 중요 아젠다로 설정하여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 3) 성인지적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위해서 성평등 제고 효과 분석, 성별수혜분석 등 학술적인 연구역량을 축적하고, 각 부처별 담당자(전문가)를 확보하여 성인지 정책관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4) 예산안 편성시 성인지적 분석에 기초한 실질적인 예산을 조성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하여 성인지적 재정운용의 필요성과 성과를 부처가 체감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국회의 성인지적 예·결산 심사
 여성가족위원회의「성인지 예산서」심사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원회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결위 소위원회 자료에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각 상임위 심사 보고서에 성인지적 심사 결과를 별도로 반영하거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종합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 부별 심사에서도 성인지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성별 분리 통계의 축적

2010년「통계법」이 개정되어 경제·사회분야 기초 통계의 성별분리통계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정책 통계의 성별분리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수행(예산집행) 관련 통계 자료의 성별 분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정부 성인지예산제도의 활성화

1) 협의조정 및 심의기구 행정조직의 운영

성인지적 역량을 갖춘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 기구가 필요하다. 성인지예산은 예산 담당부서와 여성가족정책부서, 전문가 그룹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운영이 가능해진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운영된다 할지라도 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의 정도가 이루어지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협의와 심의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어떤 기구나 기관에서도 심의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주류화 제도의 운영과 협의 조정을 위해서는 성주류화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예산담당관의 성인지예산 담당자는 이 업무 이외에도 예산관련 다른 업무를 중복하여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직속 행정기구로 성주류화 정책담당관을 전담인력으로 임명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을 통합적 시각에서 운영하며 성주류화 시범 사업을 프로젝트화 하여 추진하여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를 성주류화 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을 연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지역성평등 지표와 연계된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평가 관리해야 한다.

4. 성주류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의 활성화

거버넌스는 전통적 행정(government)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 다양한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합 협치를 의미한다. 성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을 거버넌스 체계에 통합하여 성주류화의 실행 주체인 공무원, 젠더전문가, 여성단체 활동가, 의원등이 협력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젠더거버넌스’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제도화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화가 광의적 차원의 젠더거버넌스의 확대와 구축으로는 연결되거나 발전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1)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환경 조성

정책에서 성주류화의 실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책환경’을 바꾸어가는 일이다. 정책환경의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서 관련 조례의 성주류화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성평등조례」등 성주류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성주류화의 확산과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 조례에서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통계 작성을 위한 추진체계와 책임 소재,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수행에 대한 내용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 민간단체, 성주류화 전문가, 의회 의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추진되기가 어렵다.

먼저, 성주류화 전문가 집단은 성주류화 조례 개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 의회, 공무원과 연대하여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여기서 다양한 논의와 쟁점을 확인·정리한 다음 조례 개정에 대한 직접적인 제안이나 추진은 ‘여성정책위원회’ 혹은 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성주류화 추진 부서에서는 정책 성주류화 확산을 위하여 실국별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부서별 성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그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수 사례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평가 및 시상과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제도적 기반’ 부분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중이고 각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갖추고 있으나, ‘추진체계’에서는 현재 여성정책 관련 부서에서 성주류화 관련 정책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주류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업무의 조율과 견인을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실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치단체의 각 실국에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하여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행 과정에서 총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방안은 정책의 최고결정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하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여성계의 강한 요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과제선정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법이다. 과제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참여 범위를 모든 부서의 실국장으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과제선정 단계에서부터 정책 전반의 성주류화 추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성주류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과제선정을 주도 하면서 다른 부서들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협조에 소극적이거나 과제 수행에 반발하는 부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선정에서 누락되거나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모든 정책 부서들이 책임의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부서별 업무 관리 책임자인 실국장이 과제선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과 수행 및 환류까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성주류화의 확산을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환류 상황이 민간단체, 전문가, 의회를 포함하여 관련 정책위원회까지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관련 정책 위원회에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환류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 위원회에서 사업 및 예산의 자문, 심의 과정에 성주류화의 이슈가 접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성별영향평가와 같은 성주류화의 추진은 공무원 집단의 관련 부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주류화 실행주체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성주류화 추진에 관여하는 실행주체로서, 민간단체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면서, 정책과 예산의 자문, 심의 등 정책 추진에 일부 개입하고 있는 관련 위원회를 포함해야 한다.

민간단체와 전문가 집단이 정책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한다면, 관련 위원회는 정책 결정의 장에서 해당 정책들의 성주류화 추진을 점검하고 제언할 수 있는 보다 직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성인지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가 집단은 이들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성주류화 이슈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진행해 가는 작업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주류화가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되어야 할 것은 ‘고위 관리직의 관심 및 지원’이다. 현실적으로 정책의 관심과 집행에 대한 강도는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관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주류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중간관리자급의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교육의 확대와 함께 정책의 성주류화 필요성과 현실의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집행의 현장에서 활용하려는 시도들을 장려해야 한다.

정책 추진에 있어 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정 정책 분야의 경우 많은 부분의 사업들이 민간단체 위탁·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는 공무원의 성인지적인 관점과 민간단체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성주류화 실행주체의 삼각연대 강화

정책이 성주류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환경도 변해야 하고, 실행주체들이 적절하게 실행도구를 활요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완수해야 가능해진다. 공무원, NGO, 전문가, 의원, 언론인 등이 서로 협력적 관계를 맺으면서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환류를 수행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평가 등 제반 절차들을 성인지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NGO의 역할은 정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성인지적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정책 수행에 대한 제언을 수행하는 것이다. 성주류화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의 정책 성별영향평가 및 정책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을 담당하고 심층연구와 정책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다른 실행주체들의 성주류화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실행주체들이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한 태도와 전문성, 관련 제도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영역의 성인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성주류화 실행모델의 작동에서 가장 필요한 과제이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종사자들의 성인지력 향상이 어떤 계기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가 풀어야 할 난제로서 자치단체의 경우 성주류화 전문가 집단이 이러한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가야 하는데, 지역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전문가의 인력풀이 충분하지가 않다. 대부분 지역내의 대학에서 여성정책이나 성주류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전공과정 및 부설연구소가 드물기 때문에 지자체의 출연연구기관인 발전연구원내의 여성정책연구팀이 성주류화 관련 연구와 성인지교육 등을 병행하기 때문에, 공무원과 민간단체 영역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촉매 역할을 하기에는 힘에 부친다.

각종 정책의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출발점은 실행주체들의 성인지적 접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성인지적 추진의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는 실행주체들의 성인지력이 일정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고, 또 성주류화 추진을 위한 각종 논의의 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각 자치단체는 전문가 집단이 공무원과 민간단체에 대한 성인지교육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수행해야 하는데, 지역내에서 전문가 풀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웃해 있는 여성정책개발원 등 여성관련 교육·연구기관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전문인력 풀을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은 정책 담당 공무원들과 민간단체 종사자들에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및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 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은 과제 선정이나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중장기 계획,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컨설팅의 개입은 민간단체 종사자들이 사업의 기획과 운영에서 성인지적 시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그 과정을 의원 등 관련 집단들에 대해서도 확대해야 하고, 성인지력 향상은 성인지 교육만이 아니라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전문가 집단은 담당 공무원들에게 정책과 관련하여 성주류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제언하여야 한다. 민관협의체인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성주류화의 측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제언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성주류화 전문가의 인적 자원이 확대되도록 전문가 발굴과 육성작업에도 노력해야 한다. 특히 연구자 및 교육자들이 성주류화 관점과 접목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내고,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성주류화의 중요성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에게 정책을 입안·수행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정책 규모나 효과면에서 중요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심층적으로 진행하도록 요청하고, 평가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 환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자체 보조금이 투입되는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추진되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지역적 차원에서 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실적 관리를 넘어서 사업 프로그램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은 민간단체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성 인지적

수행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민간단체의 성인지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무원은 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조직이 성주류화를 달성해가는 연대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관련 내규의 정비 등을 해 나가야 한다.

민간단체는 성인지적으로 분석을 해 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면서 정책에서 성주류화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이것이 정책에 반영·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

사실상 전문가, 공무원, 민간단체가 서로 다른 집단들에 대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며, 이 실행 과정들이 연쇄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책의 성주류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의 젠더거버넌스 연계·협력을 통한 성주류화 발전전략

지역정책의 성주류화는 정책 담당자와 NGO 그리고 관련 전문가 세 집단의 파트너십과 성주류화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성주류화 전략이 개발되어야 가능해진다. 지역의 현실에 맞는 성주류화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성주류화 현황과 여건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 또한 지역 현실에 부합한 성주류화 제도화를 위한 전략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

정책을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략 도출과 실행 모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의 관련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성주류화 실행의 관점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호 발전시키고, 자신이 속해있는 분야 및 업무와 관련하여 향후 정책 추진과 관련한 실천의 방법들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워크숍이 정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실행주체인 공무원,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의 구성원들로 T/F팀을 꾸리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정책목표를 재설정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책 효과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례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개발하면서, 현장에 적용하여 그 과정에서 공동의 지식을 창출하고 정책에 재반영 하는 성과를 이뤄 나가야 한다.

(1) 정책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워크숍 운영

워크숍 활동은 구성원들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기, 다른 주체들의 관점과 역할들을 이해하고 협력적 관점에서 생각하기를

목표로 해야 한다. 또한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향후 정책의 제도적 실천과 추진방법, 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고, 워크숍을 통하여 이전과 달라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앞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 참석은 사업 담당자, 관련 NGO, 성인지 정책 연구 전문가로 구성하여 대상 집단과 영역이 다양하지만 사업 유형에 따라 관련 있는 사업 담당자와 NGO, 전문연구자가 참석하도록 한다.

워크숍은 FGI(Focus Group Interview) 형태로 진행하고, 질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을 가능하게 한다. 활동의 목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업무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다른 주체들의 관점과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정책의 제도적 실천과 추진방법, 정책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공무원, NGO, 전문가 집단과의 인터뷰를 함께 진행하면서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성주류화 실행을 위한 전략개발과 실천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성주류화’나 ‘성인지’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알고 있는지, 정책추진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얼마나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지, 정책에서 ‘성별을 고려한’ 기획이나 추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 성주류화에 대한 사전 인식조사를 한다면 워크숍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성주류화 관련 위원회의 기능 강화

실행주체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대개 여성정책의 효율적 후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자문기구로서 ‘여성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여성관련 예산·사업을 자문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정책의 성주류화를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위원들의 성인지적 인식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여성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 설립된 위원회이지만, 제도적으로 성주류화 정책 추진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정책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정책의 성인지적 검토·평가·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활동으로 연구·조사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워크숍, 세미나 등 부가적인 활동과 분과위원회별 학습·토론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중에 “성인지 이슈”가 포함되어 위원들의 의식을 환기시키고 향후 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만, 주류정책에 성인지관점이 녹아들고 정책의 성주류화가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정책위원회들이 성주류화 추진체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책에 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가 여성정책위원회에 공유되고, 소속 위원들이 결과 및 환류에 대한 의견제시와 성별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여성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성주류화 실현에 필요한 정책 자문과 필요한 사업의 제안 및 심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능 확대는 조례 개정과 같은 정책환경의 개선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성주류화 도구의 실행력 강화

실행도구 차원의 발전 전략은 성별영향평가의 강화 및 확대, 성인지 통계 생산 강화, 다양한 대상의 성인지 교육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성별영향평가의 확산과 환류를 위해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후속적인 평가 및 관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한 해의 지자체 및 기초자치구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우수사례들을 모아 '보고대회'의 형식으로 파급시키고, 정책 환류로 연계된 성과들을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대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민간단체 종사자들이 발표와 토론으로 성주류화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나눌 수 있고,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성인지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성인지 통계가 지속적으로 다양한 성별분리 통계가 생산되어야 한다. 성인지 교육은 공무원, 민간단체, 의회 의원,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집단에게 제공될 수 있다.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시간의 증설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단체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은 보수교육이나 관련 워크샵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강화되어야 한다.

성인지 교육은 성인지와 관련한 개념이나 절차 등을 습득하는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성인지적 행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실천의 차원을 함께 지닌다. 그런 점에서 성인지교육은 교육 대상자들로 하여금 공감과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성주류화 혹은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설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표 7> 성주류화 실행모델 발전전략

| 구분 | 발전 전략 |
|------|---|
| 실행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위원회” 성인지적 기능 강화 * 민간단체의 성인지 정책추진 개입의 제도화 * 의회의 성인지 정책추진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 확대 |
| 정책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례의 성 주류화 내용 강화(전문가, 민간단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제안 가능) * 실국별 여성정책 책임관 지정 * 여성정책위원회가 성별영향평가 결과/환류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우수 성별영향평가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
| 실행도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확대 * 심층 성별영향평가 시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시범 연구 * 민간단체 종사자 보수교육 등에서 성인지 교육 포함 * 의회 의원 연찬회 등에서 성인지 교육 포함 * 공무원, 민간단체, 의원 등 대상자별 성 인지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보고대회 개최 * 성별분리 통계 생산 강화 |

실행주체, 정책환경, 실행도구의 측면에서 살펴본 문제점을 개선하여 특정 사업이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긴밀한 젠더거버넌스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위에 제시한 ‘성주류화 실행모델 발전전략’이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성주류화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성주류화 실행주체들의 젠더거버넌스가 강화되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좌 장: 강익자 (제주특별자치도의원)

토론자: 김준표 (사회학 박사, 제주대 강사)

정이은숙 (제주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전. 충남여성정책특별보좌관)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인지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

김준표 (사회학 박사, 제주대 강사)

1. 성주류화 정책: 여성주의적 성평등 운동의 법제적, 제도적 결과물

성평등 달성과 관련된 지표들은 성평등에 대한 착시이며,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는 존재라는 김경희님의 현실진단에 동의합니다. 성평등 정책의 최종 목표가 여성과 남성이 사회와 개인의 삶을 형성하는 동등한 권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권력과 영향력의 동등한 분배, 남성과 여성의 경제적 평등, 보살핌과 가사의 동등한 분배,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의 종식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희님과 강경숙님의 발제는 대체로 성주류화 정책의 법제적 제도적 결과물에 대한 지난 10년의 발전과정을 짚어가며 아직 미진한 부분, 좀더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제안들을 해주셨고, 그 제안들이 모두 성인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증진 방안

김경희님께서서는 성주류화 전략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성주류화 연대 기능이 약하고 공무원, 민간 단체의 성주류화 인식이 낮은 편이며 전문성 또한 부족한 현실이므로, 성인지적 시각의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개선과제들을 제시 하였습니다. 강경숙님께서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집중하여 제주10년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성인지 정책 담당기구의 위상강화 및 전담 인력 확충, 성인지정책 담당자 (총괄, 과제)의 인센티브 제공, 젠더 거버넌스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분의 핵심주장은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를 추동하여 결재서류에 성인지 결과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담당기구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공무원 조직 내부에 성인지 전문가를 5급, 6급 선에 개방직위로 투입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를 성주류화 지원센터로 확대하여 성인지 예산 업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김경희님의 제안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 고민되는 지점, 여성주의 훈련과 실천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고민의 지점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정책들에 대한 성인지적 성별영향평가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지표이기도 합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 역시 성평등의 지표가 될 것이고, 제안하신 방안들 역시 그러합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성평등지수는 높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실질적인 성차별이 극복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김경희님께서 전제하신 것처럼, 성평등의 착시효과를 키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점이 저의 고민입니다. 제안해주신 방안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민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궁리한 결과, 두 가지 정도의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5, 6급에 개방형직위를 요구하고 그 자리에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식 이외에 9급 7급 공무원 선발 단계에서부터 여성주의가 공직사회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선발 시험에 여성학 과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공무원 수급에서 일반임기직제를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선발 단계에 개입이 어려우면, 임용교육과 보수교육에서 40시간 이상의 성인지교육을 필수화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하나는, 강경숙님께서 말씀하신 성평등이라는 본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의무교육 대상자들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훈련(실천)센터를 시급히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적으로는 대체복무의 한 축이 되어 군복무에 준하는 기간 동안 여성주의의 훈련과 실천이 체화되는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문

정이은숙(전. 충남여성정책특별보좌관)

제2발제문은 성주류화정책 전반의 내용을, 제1발제문은 제주지역 성주류화정책의 현황과 효율성제고방안을 심도 깊게 분석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큰 그림과 지역에서의 구체적 현상을 균형감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믿는다. 두 발제문의 내용은 현재시점에서 성주류화정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과제¹²⁾를 잘 보여주며, 본 토론자 또한 제시된 대안적 방안들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성주류화정책 전반의 과제와 대안적 방안들 속에서 우리 지역차원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선택할 것인가라는 전략적 논의가 중요하게 생각된다.

제1발제문에서 제주지역의 성주류화추진의 현주소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담당기구의 위상, 전담인력 및 예산의 문제, 전문가그룹 양성의 지역적 한계, 무엇보다 성평등인식 및 성평등비전에 대한 합의의 부재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추진기반이 미약함이 분석되었다. 그렇다면 성주류화추진을 위해 우리지역이 가지는 강점을 무엇일까? 성주류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지역이 가지는 미약한 부분 뿐 아니라 강점을 찾아내고,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 중에 무엇에 더 우선 집중할 것인지, 연차별 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

12) <표 7> 성주류화 실행모델 발전전략(김경희)에서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구분 | 발전 전략 |
|------|---|
| 실행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위원회” 성인지적 기능 강화 * 민간단체의 성인지 정책추진 개입의 제도화 * 의회의 성인지 정책추진 기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 확대 |
| 정책환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조례의 성 주류화 내용 강화(전문가, 민간단체,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제안 가능) * 실국별 여성정책 책임관 지정 * 여성정책위원회가 성별영향평가 결과/환류에 대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우수 성별영향평가 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
| 실행도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성별영향평가 확대 * 심층 성별영향평가 시 민간단체 사업에 대한 시범 연구 * 민간단체 종사자 보수교육 등에서 성인지 교육 포함 * 의회 의원 연찬회 등에서 성인지 교육 포함 * 공무원, 민간단체, 의원 등 대상자별 성 인지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성별영향평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보고대회 개최 * 성별분리 통계 생산 강화 |

각된다.

따라서 본 토론문에서는 수년간 제주도와 타지역에서 성주류화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중심으로 선택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향후 성주류화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어 성주류화정책논의 및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 본 토론자가 이를 우선으로 제안하는 이유는 우리지역이 65만의 인구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가졌다는 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높은 현장성을 유지하면서도 자치도 차원의 논의테이블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주류화정책실행 각 단계(사업선정에서부터 환류검토에 이르기까지)마다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필수적이다. 제1발제문 <표9>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 정책과정에 참여해온 컨설턴트들(2016년 21명)과 관련 NGO, 젠더전문가, 도의원 등이 참여하되, 정책실행 단계에 맞는 상시운영계획을 통해 정책의 환류까지를 담보해내는 논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주류화정책은 거버넌스 구조 없이는 실현불가능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젠더거버넌스(공무원, NGO, 젠더전문가, 도의회)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실질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제주지역 성주류화거버넌스는 제도의 전면시행과 함께 시작되기는 했지만 다양한 주체들과 파트너십의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여성단체 및 연구자 발굴과 정책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워크숍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2개 분과위원회 중 하나인 성주류화분과위원회와 연계를 통해 우리 지역의 성주류화자원을 연결하는 “제주성주류화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젠더전문가 및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성주류화거버넌스의 실질적 활성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우수지역사례에 대한 연구와 모델링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수사례로 알려진 서울시 성평등위원회활동에 대한 사례연구와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핵심도정과제 등 성평등과급력이 높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집중적인 성주류화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연차별 이행 점검 등 꾸준한 분석평가를 통해 지역 내

에서 성평등한 변화로 확연히 드러나고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단 몇 개라도 집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정책임자 및 정책리더들의 성평등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성평등 제주를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발전방향

이선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이를 위해 정책에서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효율적 정책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해 정책 실행을 실시함(여성가족부, 2016)¹³⁾.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결과적으로 ‘(지역)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해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실시함. 최근 ‘개선실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10년, 성과와 과제’에선 제주의 제도 추진 성과와 성평등 개선 성과,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 제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실행 전반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줌.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에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근거, 자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2012년 이후 본격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범위가 확대, 현재까지 제도 구비 및 양적인 부분에서의 성장을 잘 이뤄지고 있음을 제시함.
 - 2015년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거점 센터’로 지정된 이후 협의조정기구이나 컨설팅 지원 활성화, 컨설턴트 양성 등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음.
 - 주목할 부분은 성평등 개선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구체적 개선안의 제시 미흡이나 기계적 평등으로 제시, 물성적 관점에서의 성평등 조치 사항 도출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의 문제점을 잘 제시하고 있음.
 - 발표문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행정적 기반을 충실하게 재정비 할 것, 예산의 지원과 대상 과제 선정과정 및 환류 체계의 개선을

13)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제시함. 또 젠더 거버넌스의 강화와 성평등 인식 확산을 언급함.

- 개선안으로 제시된 모든 항목이 제주의 성평등,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를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현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중심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의 실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주류화 정책의 성평등 효과성 제고 방안’ 에션 성평등 현황, 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과 고민, 성주류화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성주류화 제도의 발전 방향 및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제시함.

- (김경희 대표님의) 발표문에서는 현재의 성평등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정책과 성주류화가 ‘왜 아직도 필요한지’, 어디서부터 고민이 시작되어야 하는가를 잘 제시해 줌. 특히 성주류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방대한 논의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무엇을 향해 가야하는가에 대한 비전을 잘 제시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등 정책에의 개입이 단순한 지평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성평등 달성을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의 발로임을 제시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의 성주류화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성주류화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두 제도의 연계 강화, 성인지예산의 실질적 운영 강화와 젠더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등을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에 대한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제주에의 시사점이 클 것으로 보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도입 후 10년, 긍정적인 성과를 논하기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얘기하기도 함. 그러나 제도의 한계를 논하는 것도 중요하나 제도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함.

- 기계적 평등과 몰성적 분석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고, 아직도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경우도 많음.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두 발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제도간 연계 강화, 젠더 거버넌스의 충실한 운영, 거버넌스 주체들의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이 너무도 필요한 실정임.

- 지역 중심의 컨설턴트를 중심으로 대상 과제 선정에서 정책에 대한 분석,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의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교육과 모니터링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는 단순히 ‘보고서의 작성’에서 어떠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글자로의 분석·작성’에 머무는 것이 아닌 성인지적 관점에서 전체 사업을 조망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해 성평등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를 평가하는 것임. 최근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 예산에 대한 컨설팅, 검토의견서 작성이 작성 및 분석의 주체인 공무원의 (성평등)인식전환이나 성평등한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아닌 ‘대필’의 역할이 되어버린 경우도 많음.
 - ‘젠더 전문가’인 컨설턴트는 젠더이슈를 찾아내고, 젠더감수성을 행정애 그리고 시민사회와 의회, 언론에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제도의 빈 공간을 컨설팅 과정을 통해 메워나가는 것, 분석평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검토의견을 통해 좀더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본연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뿐만 아닌 성주류화 제도간의 연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제주의 성평등 목표는 무엇인가? 어떻게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은가? 제주의 젠더 거버넌스 주체들은 나아가 제주 시민이 그리는 성평등의 그림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주류화 추진 도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깊은 고민이 지속되길 희망함.

